

그린워싱 관련 법제와 해외 분쟁 사례

2023. 5. 2.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윤윙희



목 차

I. ESG 리스크 근거 규범과 그린워싱 법제

3

II. ESG 소송 사례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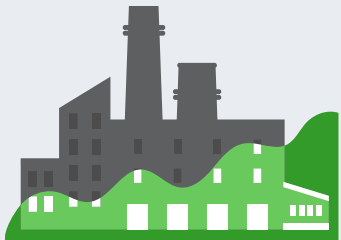
26

I. ESG 리스크 근거 규범과 그린워싱 법제

1. 그린워싱의 문제 상황 –

그린워싱의 동기와 이해관계자, 관련시장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의 개념



Greenwashing

그린워싱: 모호하거나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한 **‘환경에 관한 주장’**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Green Claims Directive, EXPLANATORY MEMORANDUM)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ESG 등 논의가 발전하며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기업의 이윤/자금 확보와 연결됨
⇒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유인이 생김
⇒ 기업 제품 등의 “친환경성”에 대한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왜곡될 위험
- ESG 논의가 발전하며 환경 외 ESG 요소(인권, 강제노동 금지 등)에 대한 ‘ESG Washing’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경향

프랑스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 법률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 프랑스의 기존 광고 규제에 더하여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를 추가

☞ “환경에 관한 영향” 관련 광고도 규제 대상: ‘탄소 중립’ 등 표현 규제

관련 입법 및 규제 사례 증가

☞ EU Green Claims Directive (Proposal), Regulation on the EU Ecolabel,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 Code), 영국 CMA의 친환경 주장 지침 등

현재 규제 체제에서 ‘그린워싱’은 주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대상 허위광고 문제로 규율되나,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문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 그린워싱의 문제 상황 –

그린워싱의 동기와 이해관계자, 관련시장 등



2. ESG 리스크의 근거/개념/범위/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함



2. ESG 리스크의 근거/개념/범위/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함

리스크의 범위/ 성격/ 식별 방법/ 관리 도구/ 관리 체계 등에 있어 기존 준법 리스크와 구별됨

구별	전통적 준법 리스크	ESG 리스크
리스크 범위	① 공적 규제(경성 규범) : ESG 각 영역별 주요 관련 법령상 규제	① 공적 규제(경성 규범) : ESG 각 영역별 주요 관련 법령상 규제 + ESG 제도에 따른 추가 규제(의무공시, 녹색분류체계 등) ② 국제규범/외국법령 – CSRD&ESRS, CSDDD, CBAM 등 ③ 연성규범 등 – 공시기준, 평가기준 등
리스크 성격	① 정부/기업 간 법률적 사안을 전제로 논의 → 공적 규제(경성 규범)	① 정부/기업 간 법률적 사안을 전제로 논의 → 공적 규제(경성 규범) ② 투자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와 기업 간 법률적/계약적 사안까지 포괄한 상황을 전제로 논의 → 사적/자율 규제(연성 규범)
식별 방법	① 준법 리스크 풀에 기초한 식별	① 준법 리스크 풀에 기초한 식별 ② ESG 평가 질문지, 공시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식별
관리 도구	① 주요 법령별 준법 리스크 풀, 체크리스트, 사고/조사 대응메뉴얼 등	① 주요 법령별 준법 리스크 풀, 체크리스트, 사고/조사 대응메뉴얼 등 ② ESG 리스크 플랫폼 (울촌 ESG 인덱스 통한 진단/식별 포함)

1. ESG 리스크의 근거/개념/범위/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함

리스크의 범위/ 성격/ 식별 방법/ 관리 도구/ 관리 체계 등에 있어 기존 준법 리스크와 구별됨

구별	전통적 준법 리스크	ESG 리스크
관리 실패 시 불이익	① (회사) 행정책임, 형사책임, <u>민사책임</u> + 평판 피해	① (회사) 행정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 평판 피해 ② 사적 제재 : 고객사와 거래 단절, 투자/여신 기회의 제한, 매출 하락, 인적자원 이탈 등
	• 이사의 민사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 고의/과실 법령/정관 위반행위 -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 고의/중과실 임무해태행위 • 유니온스틸 판결, 대우건설 판결 등 → 이사(평이사 포함)는 내부통제시스템(특히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해야 할 의무(감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 부담(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등)	•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대법원 법리가 “중대한 ESG 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대비 필요 [참고]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강원랜드-태백시 대법원 판결)
관리 체계	• 법무/준법지원인 중심의 관리체계가 일반적 - 대법원: 최소한으로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대법원 2017다222368 등) - 준법통제제도(상법 제542조의13 등)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 ESG 위원회를 정점으로 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필요성 - 준법 관리체계와의 통합/조화 이슈: 조직 간 경쟁/협업? - 그룹 전체의 ESG 리스크 식별/모니터링/관리 이슈: 경쟁법상 이슈? -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파트너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 - 해외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 문제?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1-1) ESG “요소” 관련 국내 법령상 리스크를 식별/대응하는 것이 ESG 리스크 관리체계의 출발

환경 (Environmental)

매체 별 환경보전:

대기/물/토양환경보전법

기후변화, 에너지이용: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폐기물/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화학물질 규제:

화관법,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법, 유전자원법, LMO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단속법,

녹색제품구매법

사회 (Social)

경쟁보호:

공정거래법 및 광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인권: 형법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인권정책기본법안(‘21. 12. 정부안)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지배구조 (Governance)

대리인 문제

상법 (이사·감사 등)
형법 (업무상배임죄 등)

공시의무 관련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외부감사법

기업집단규제

공정거래법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등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

반부패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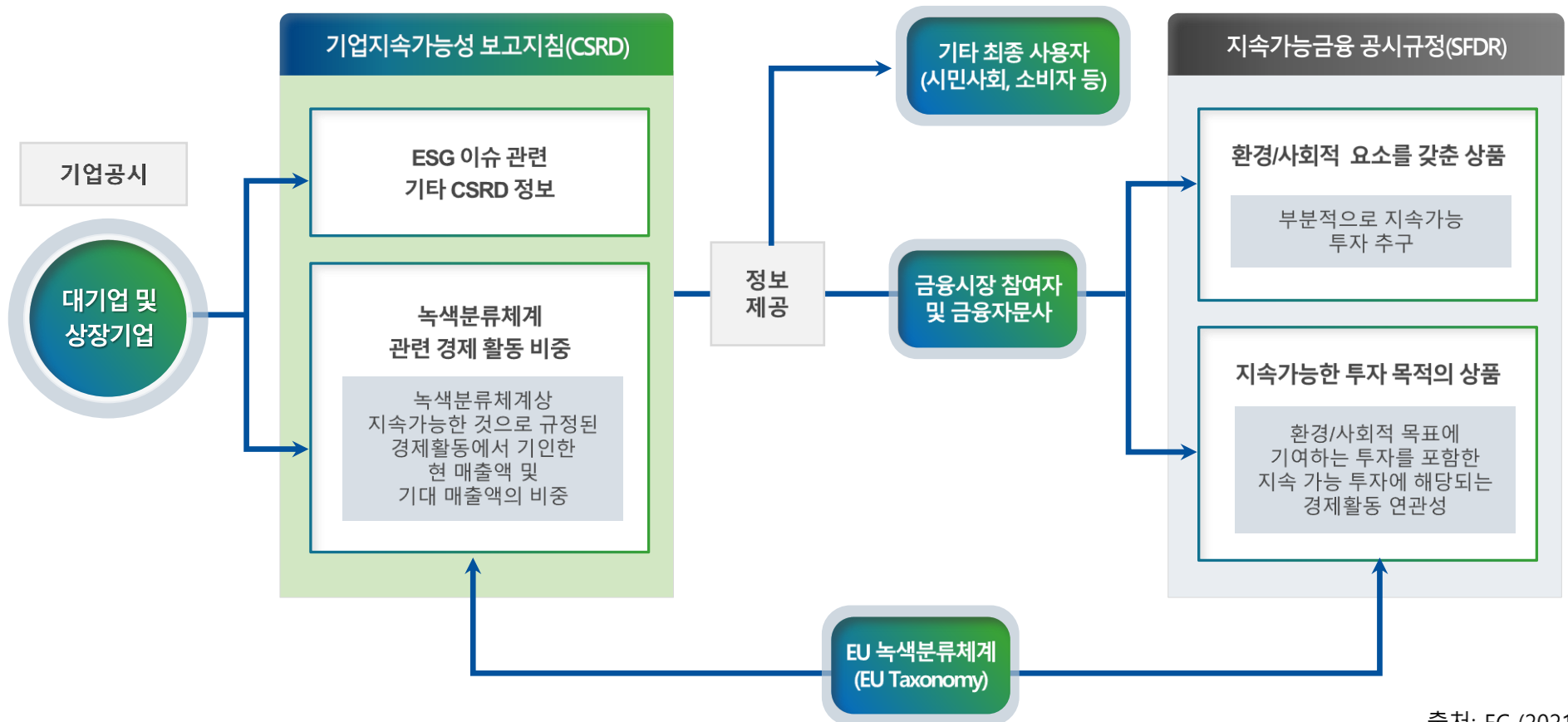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1-2) “외국의 ESG 제도”의 내용 및 그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EU	한국
녹색(산업) 분류체계	• EU Taxonomy Regulation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 ('22. 1. 초안 발표) → 해당 경제활동만이 지속가능 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녹색채권 기준, 공시 등이 이루어짐 – 원전/LNG 포함	• 환경책임투자의 지원(환경기술산업법 10조의4) – 금융기관은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노력할 의무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 시행 ('23. 1): 원전 관련 논쟁, LNG는 '35년까지 한시적 포함 – 기업의 환경 성과 평가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22. 2)
녹색채권 기준	• EU Green Bond Standard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그린본드에 관한 기준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행('23. 1) – 환경부/금융위/환경산업기술원/거래소
금융회사 공시 제도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 EU 역내의 연기금, 자산운영사 및 해당 금융상품 관련 ESG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21. 3. 시행)	•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21. 1. 거래소 가이드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지배구조보고서: '1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ESG 정보 공시 제도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18년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24년부터 단계적 시행) → CSRD의 공시기준으로서 ESRS 초안 발표('22. 5)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환경기술산업법 16조의8) • [참고] K-ESG 평가지표 공개('21. 12. 산업부)(산업발전법 18조)
기업인권경영 (BHR) – 인권실사/공급망실사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22. 2) – EU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의 지침안 →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ESG 부정 요소에 대해 실시하고 이를 예방/완화 및 공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부과	•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21. 12. 법무부)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17조 1항: ① 기업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② 제3자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됨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참고] EU 녹색분류체계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2) "국제 규범" 및 관련 "외국 법령"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ESG "요소" 관련 주요 국제 규범

지속가능 비즈니스/시장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2004)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환경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
인권	•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ILO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 ILO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 IL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윤리/반부패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1999) •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3)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2) “국제 규범” 및 관련 “외국 법령”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 '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제정
- '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시행
- '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시행



- EU Taxonomy Regulation
- EU Green Bond Standard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2021 금융위 ESG 공시의무 확대 계획 발표
환경부 K-Taxonomy 발표
산업부 K-ESG 평가 지표 발표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2021 공급망실사법('23. 시행)
공급망의 인권/환경
실사/공시 의무



- 증권법('20. 개정)
회사 경영방침,
사업 범위 중대 변화,
중대한 투자행위,
중요 계약 체결 등 관련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
- 환경보호법('15. 개정)
오염물질 관련
중점오염배출기업의
공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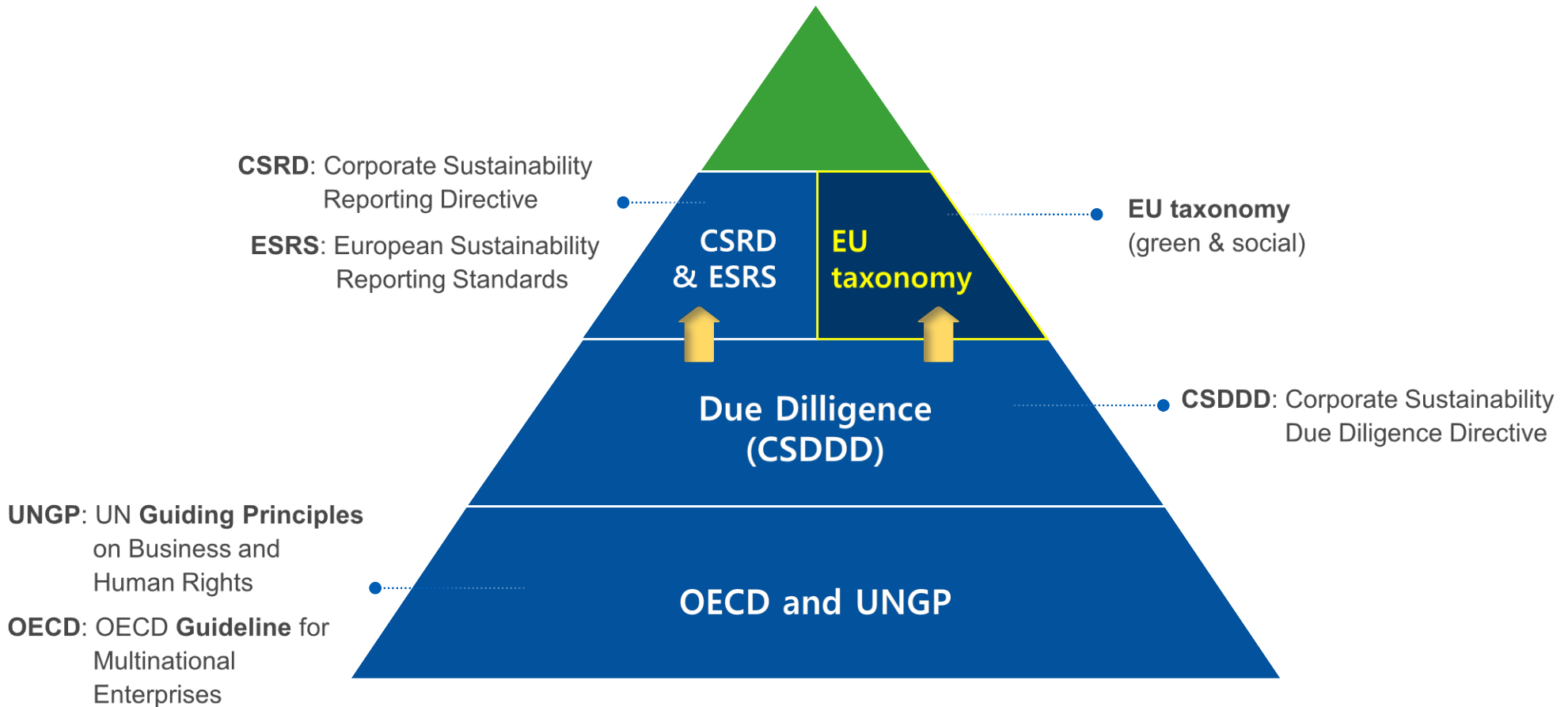
2022 금융감독청
기후변화 관련 의무공시
경제산업성
인권존중 지침안



- ESG 지수 발표('20.)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대상
- 생태학적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 폐기물 방지 및
포괄적 관리법, 기후변화법,
수자원법, 환경책임법,
인권위원회법 등 발효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참고] EU 지속가능성 관련 법령은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됨



출처: Helene Regnell (2023)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3) 고객사 행동강령 등 기타 연성규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고객사 행동강령, ESG 평가지표(에코바디스 등), 정보공개 표준(SASB 등) 등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식별/선정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dvancing Sustainability Globally

국제 규범/기준 기반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 ILO 국제노동기준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세계인권선언
- UN 부패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UNGC

(1) 노동	(2) 안전 보건	(3) 환경	(4) 윤리	(5) 경영시스템
1) 자발적 취업, 2) 연소 근로자, 3) 근로 시간, 4) 임금/복리후생, 5) 인도적 대우, 6) 차별금지/ 괴롭힘금지, 7) 결사의 자유	1) 산업 안전, 2) 비상사태 대응 방안, 3) 산업재해/질병, 4) 산업 위생, 5) 육체노동,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7) 위생/식품/주거, 8) 안전 보건 커뮤니케이션	1) 환경 허가/보고, 2) 오염방지/ 자원절감, 3) 유해물질, 4) 고형 폐기물, 5) 대기 배출, 6) 물질 규제, 7) 물관리,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1) 사업 청렴성, 2) 부당 이익 금지, 3) 정보공개, 4) 지적재산, 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8) 개인정보 보호	1) 기업의 준수 의지, 2) 경영진의 의무/책임,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4) 위험 평가/관리, 5) 개선 목표, 6) 교육, 7) 커뮤니케이션, 8)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9) 감사/평가, 10) 시정조치 절차, 11) 문서화/기록, 12) 공급업체 책임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3) 고객사 행동강령 등 기타 연성규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고객사 행동강령, ESG 평가지표(에코바디스 등), 정보공개 표준(SASB 등) 등을 기반으로 리스크 식별

→ (i) 주요 ESG 평가사의 평가기준으로, (ii) 가중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리스크 식별/대응 전략이 필요

- 전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ESG 평가기관 존재
- 각 ESG 평가사의 평가기준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세부 평가항목 및 산업별 가중치 등에서 차이



출처: ERM Mike Wallace 발표자료("ESG Ecosystem 관리") ('21. 2. 3.)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3) 고객사 행동강령 등 기타 연성규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고객사 행동강령, ESG 평가지표(에코바디스 등), 정보공개 표준(SASB 등) 등을 기반으로 리스크 식별

ecovadis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기반

- UNGC 10대 원칙
- ILO 협약
- GRI 기준
- ISO 26000 기준
- CERES 로드맵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ENVIRONMENT	 LABOR & HUMAN RIGHTS	 ETHICS	 SUSTAINABLE PROCUREMENT
Operations • Energy Consumption & GHGs • Water • Biodiversity • Local & Accidental Pollution • Materials, Chemicals & Waste Products • Product Use • Product End-of-Life • Customer Health & Safety • Environmental Services & Advocacy	Human Resources • Employee Health & Safety • Working Conditions • Social Dialogue • Career Management & Training Human Rights • Child Labor, Forced Labor & Human Trafficking • Diversity, Discrimination & Harassment • External Stakeholder Human Rights	• Corruption • Anticompetitive Practices • Responsible Information Management	• Supplier Environmental Practices • Supplier Social Practices

출처: [ecovadis 사이트](https://www.ecovadis.com)

3.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3) 고객사 행동강령 등 기타 연성규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고객사 행동강령, ESG 평가지표(에코바디스 등), 정보공개 표준(SASB 등) 등을 기반으로 리스크 식별



Hyundai Motor Co SICS Industry: Automobiles

Relevant Issues (4 of 26)

Why are some issues greyed out?

Environment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Business Model & Innovation	Leadership & Governance
GHG Emissions	Human Rights & Community Relations	Labor Practices ②	Product Design & Lifecycle Management ②	Business Ethics
Air Quality	Customer Privacy	Employee Health & Safety	Business Model Resilience	Competitive Behavior
Energy Management	Data Security	Employee Engagement, Diversity & Inclusion	Supply Chain Management	Management of the Legal & Regulatory Environment
Water & Wastewater Management	Access & Affordability		Materials Sourcing & Efficiency ②	Critical Incident Risk Management
Waste &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Product Quality & Safety ②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Systemic Risk Management
Ecological Impacts	Customer Welfare			
	Selling Practices & Product Labeling			

출처: [SASB 사이트](#)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1) 제품/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관련 지속가능성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ESG 정보의 홍수,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디스커버리의 도입이 맞물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
- 최근 환경안전 요소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 증가 추세 ex)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연비 조작 사건 등
- '23년 1월 공정위 업무보고 –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제도 개선”
 -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예규 개정)
 -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 추진 - 연내 표시광고법 상 **실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실증자료 생산시기 명확화 등)

한국 법령

- 표시광고법 및 분야별 표시·광고 고시 및 지침(예: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 손해배상책임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벌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매출액의 2% 또는 5억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제품 표시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 규제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회사 내부 R&R 개선 및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1) 제품/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조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해외 법제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 41-58)

불공정/기만적 행위 등 금지되므로(Sec. 5),
부당한 광고는 기만적 행위로서 규제될 수 있음

- 법적 제재의 종류
 - 행정적 조치: 중지명령, 민사금전벌
 - 사법적 조치: 금지명령, 원상회복, 가압류 등 구하는 소송

Federal Trade Commission Green Guides

- 환경 관련 주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92. 제정)
- 일반원칙
 - 명확하고,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 제품, 포장, 서비스 및 그 전체/일부에 관한 주장을 구분할 것
 - 환경적 속성/이점에 관한 과장 금지
 - 비교 주장은 명확/입증 가능할 것



유럽 연합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Directive 2005/29/EC)

- 불공정 상행위 금지: 직업상 요구되는 성실의무에 반하고 평균적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왜곡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공정 상행위 유형: 오인야기 상행위, 공격적 상행위
- 오인야기 상행위: (i) 허위 정보 혹은 전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오인야기 작위) 및 (ii) 평균적인 소비자가 거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오인야기 부작위)

Mislead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Directive

(Directive 2005/29/EC)

- 오인야기 광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광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자를 해할 수 있는 광고
- 비교광고: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경쟁자 혹은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칭하는 광고
- 원칙적으로 본 지침은 B2B 광고를 대상으로 함 (비교광고 규제의 경우 B2C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2)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

자본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회사 성과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불성실공시 리스크 ↑

(1) 불성실공시 제재 규정의 존재

"ES" 사항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은 현재 자율공시 대상(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12호) → <u>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공시불이행 성립</u>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2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호)	 불성실공시 제재: 벌점, 제재금, 발행 주권/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등  손해배상책임 발생 (자본시장법 제162조 등)
"G" 사항	대규모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 대상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제1항) → <u>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공시불이행 성립</u>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2의2호)	

(2) 정부는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20년 거래소 내 ESG전담팀 신설), 투자자는 ESG 자율 공시의 확대를 요청하는 경향

(3) 거래소 가이드스: 정보공개원칙으로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요구

 공시자료의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ESG 리스크 및 관련 규제에 대한 포괄적 고려 필요

→ 공시 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규제기관 등의 사전 검토 포함)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2)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

한국 법령 (자본시장법 제162조 등)

- 유통시장에서 허위공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 미 증권법과 달리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대해서 고의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책임주체: 발행인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2)

면책사유	• '상당한 주의'의 항변: 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 • 악의의 항변: 증권이 취득자 등이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
------	---

- 배상액
 - ① 계속 보유시 -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
 - ② 변론종결 전 처분시 -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정

해외 법령

미국증권법	• Rule 10b-5: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u>공시자의 고의(scienter) 요구</u> • Ruel 11: 발생시장에서의 부실공시. 상당한 주의의 항변 등 가능
영국	•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부실공시에 대한 민사 책임 규정 {Section 90 (1) (b) (ii)}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2)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

자본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회사 성과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거래소 가이드스: 상장사가 ESG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
☞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가이드스를 최대한 준수함이 필수

목차	주요 내용
1. 목적	가이드스 제정의 목적
2. ESG의 개념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 · 경영진의 역할
4. 정보공개원칙	ESG 정보 공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5. 중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4. 그린워싱 법제 개관 – (2)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

자본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회사 성과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조 직	환 경	사 회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 온실가스배출 - 에너지사용 - 물사용 - 폐기물배출 - 법규위반·사고	임직원현황 :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 채용, 육아휴직 안전·보건 :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광고 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 공정경쟁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참여		

II. ESG 소송 사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ESG 소송 – 최근 동향 및 유형

ESG 소송의 최근 동향

-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함
 - ① 기업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선언을 하도록 강제
 - ②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 증가**
- ⇒ 정부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소비자단체, 임직원, 언론 등)의 **모니터링 강화**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ESG 소송의 유형

(제품/서비스 시장) 표시/광고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신고/집단소송, 경쟁당국의 소송
(자본 시장)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	☞ 투자자의 집단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 인권/환경 침해 소송, 탈플라스틱 소송 등



1. ESG 소송 – 최근 동향 및 유형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소송 사례 및 판례법리에 대한 분석/고려 필요

(1) 제품/서비스 표시/광고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 환경 관련 보증/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재활용 가부 관련 표시 등의 오류 관련 소송
-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표시 누락 관련 소송
-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마케팅 자료상 "ESG 정보의 허위"를 이유로 한 소송

➡ **(한국)** 공시자료, 제품표시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등 위반 가능성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R&R 개선 및 ESG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절차 포함)

(2) 불성실공시에 따른 집단소송

- Securities Exchange Act 위반 소송 등

➡ **(한국)** 불성실공시 처벌 규정 존재
 (i) 회사의 책임(벌점, 제재금, 매매거래 정지 등): 자본시장법 등
 (ii) 경영진의 책임: 상법 399조, 401조

📌 공시 전 전문가의 검토 절차 마련 (규제기관 사전 협의 절차 포함)

(3)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 인권/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기후변화 소송, 탈플라스틱 소송 등 (미국)

➡ **(프랑스)** 인권실사법 ('17. 3. 시행)
(독일) 공급망실사법 ('23. 1. 시행)
(EU) CSDDD ('22. 2)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22. 6. ~)
(한국) 인권정책기본법안 ('21. 12. 발표)

📌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2-1. 제품 표시, 공시 자료상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1) 환경 관련 보증/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재활용 가부 관련 표시 등의 오류 관련 소송

Koh v. S.C. Johnson & Son, Inc. (No. 09-00027, 2010 U.S. Dist. LEXIS 654 (N.D. Cal. Jan. 6, 2010))

근거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 (Consumer Legal Remedies Act, Unfair Competition Law, False Advertising Law) → 합리적 소비자 테스트(reasonable consumer test): (1) 당해 문구가 허위/기망에 해당하고, (2) 합리적 소비자라면 당해 허위/기망 문구로 인해서 오인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법원 판단	‘그린리스트(Greenlist)’는 피고 스스로 만든 지표임에도 자신의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Greenlist Ingredient)”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3자에 의해 녹색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음 → 원고의 주장 인용
관련 소송	- 제품 표시 문구에 비추어 (1) “기업의 제조 공정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전하다”고 오인됨 이유로 한 소송, (2)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오인됨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제기됨

2-1. 제품 표시, 공시 자료상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2)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표시 누락 관련 소송

Hodsdon v. Mars (891 E.3d 857, 859 (9th Cir. 2018))

근거 법률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
(Consumer Legal Remedies Act, Unfair Competition Law, False Advertising Law)

→ (1) 누락된 당해 문구(omission)가 “피고가 표시한 내용”과 배치되거나,
(2) 피고가 당해 문구를 표시했어야만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 가능

법원 판단

- “제품의 주된 기능 또는 목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이 아닌 이상
피고는 제품에 이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표시를 누락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주로 기업식 영농 및 식품 회사와 관련해 문제되었는데,
기업들에게 해당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청구를 인용하지 않음

시사점

- 향후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소비자의 인식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인권 실태도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 존재
- 기업인권실사 법령 확대 경향에 따른 법리 변화 움직임이 예상됨

2-1. 제품 표시, 공시 자료상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3)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위반행위 관련 집행

미국 경쟁당국(Federal Trade Commission : FTC)의 집행 사례

근거 법률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Green Guides

(제품 포장, 라벨,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케팅에 있어 녹색을 표방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 **합리적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누락/행위는 기만적인(deceptive) 것으로 간주됨**
(공급업체와 관련된 기만적인 정보 제공도 문제될 수 있음)

FTC의 판단

- FTC의 제재 사례:
 - ① Moonlight Slumber LLC가
자신들의 유아 매트리스가 'organic'이라는 허위 광고를 한 사건
 - ② Volkswagen과 Audi가
'clean diesel'이라는 표현으로 마케팅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한 사건 등



2-1. 제품 표시, 공시 자료상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4)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마케팅 자료상 “ESG 정보의 허위”를 이유로 한 소송

Ruiz v. Darigold, Inc. (No. 14-1283, 2014 U.S. dist. LEXIS 155384 at *2 (W.D. Wash. Nov. 3, 2014))

근거 법률

- 소비자보호법 (District of Columbia Consumer Protection Procedures Act 등)

→ 당해 문구가 ‘구체적 이행 사항’(concrete commitments)이 아닌
‘추상적 목표’(aspirational statements)에 불과한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아님

원고 주장

- CSR 리포트에 ‘sustainable farming, animal well-being, fair treatment of employees’ 등 문구 기재

→ 이를 신뢰하고 피고 유제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 측 농장 소속 근로자/동물의
처우 관련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함

⇒ CSR 리포트 상 당해 문구는 허위이고 피고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법원 판단

-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청구가 인용되지 못함

2-2. 증권 사기 소송 (Securities Fraud Claims)

Securities Exchange Act 위반 소송

In re Vale S.A. Sec. Litig., No. 1:15-cv-9539-GHW, 2017 U.S. Dist. LEXIS 42513 (S.D.N.Y. Mar. 23, 2017)

근거 법률

- 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0-b,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ule 10b-5

→ SEC에 ESG 자율 공시 할 때 증권 거래 관련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 금지

법원 판단

- 피고 회사의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속가능보고서 등 회사의 공시 자료에서는 “환경, 건강, 안전 관련 규제 준수에 힘쓰고 있고, 리스크 완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가 공시 자료에 댐의 안정성 감시 관련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재를 한 것으로서, SEC Rule 10b-5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소송

- Ramirez v. Exxon Mobil Corp., 334 F. Supp. 832 (N.D. Tex. 2018)
피고 회사는 기후변화 규제가 사업에 끼칠 재정적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인 ‘proxy cost’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고, 그 결과 재정적 영향에 관한 산정 수치가 왜곡됨

→ 기후 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함
[참고] 법인뿐만 아니라 누락/허위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했던” 경영진 개인도 법위반 주체로 보는 경향

2-3.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인권/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기후변화 소송, 탈플라스틱 소송 등

Doe v. Apple Inc., Civil Action 1:19-cv-03737 (CJN) (D.D.C. Nov. 2, 2021)	
관련 법률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직접적인 고용주/가해자가 아니더라도, (i)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행위에 (ii) 공조하여(venture) (iii) 해당 사정을 알면서 이익을 취했고 (iv) 위 행위가 법률에 위반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손해배상 의무 부담 ⇒ <u>공급 체인 과정 중 일부에서 인신 매매, 아동 노동 착취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사업장에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음을 이유로 한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음</u> (인신 매매, 아동 착취 등 행위에 대해서는 Alien Torts Statute에 근거한 청구도 가능)
법원 판단	“피고들(애플 미 IT 기업)이 ‘아동 착취’를 행한 업체들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아동 착취 등에 공조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소송	(i) Rahaman v. J.C. Penney Corp., 2016 WL 2616375 (Del. Super. Ct. May 4, 2016) (ii) Doe I v. Wal-Mart Stores, Inc., 572 F.3d 677 (9th Cir. 2009) : 유통업체 내지 소매상은 그들이 물품을 구매해오는 해외 공장의 근로 환경 및 안전성을 감시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

감사합니다

Professional Profile



변호사

윤용희

Tel: 02-528-5284 E-mail: yhyoon@yulchon.com

Education

- 2014 Stanford Law School
(LL.M. i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2014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법정책연구과정 수료
- 2012 서울대 법학 박사 과정 수료
- 2008 서울대 법학 석사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4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Professional Experience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ESG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법률신문사 주관 평가)
- 2023~현재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환경공단 ESG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ESG전문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품질경영학회 이사
- 2021~현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2020~현재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 위원
- 2020~현재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 2021~현재 한국PR협회 지속가능위원회 위원
- 2021~현재 한국ESG학회 이사
- 2018~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
- 2017~현재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 2012~현재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6~2017 제주대 로스쿨 겸임교수
- 2016~2017 환경부 고문변호사
- 2014~2015 미국 Sidley Austin LLP 파견근무
- 2014~2015 북가주한미변호사협회 (KABANC) 이사회 위원
- 2006~2009 육군법무관 (군검찰장교)

Representative Deals

[ESG/ 환경안전보건/ 에너지 분야]

- * 식품/화학/보험/클라우드/게임 회사 등을 위하여 ESG 경영체계 도입,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공급망 실사, ESG보고서 작성, ESG 공시 대응, ESG 평가 대응 관련 자문 제공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위반 관련 배출량 검증기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을 위하여 배출권 할당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입장 변경 도출
- *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분담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부의 입장 변경 도출, 완구업체를 위하여 완구화장품 리콜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제공

[공정거래 분야]

- * 쉘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에서 쉘컴 대리, Delivery Hero SE의 우아한형제들 주식인수 기업결합 건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MFN) 건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대리
- * 전자제품제조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및 항공/우주항공 보험 담합 건에서 각 심사절차종료 결정 도출, 통화스왑 입찰담합 건, 비자발급 신체검사로 담합 건, 디지털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규제샌드박스 건 등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601, F6 Diamond Plaza, 34 Le Duan, Ben Nghe Ward,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 28 3911 0225 Fax: +84-28-3911-0230 E-mail: hcmc@yulchon.co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24-3837-8200 Fax: +84-24-3837-8230 E-mail: hanoi@yulchon.com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828, Level 8, Bank of East Asia, 66 Huayuan Shiqiao Road, Pudong, Shanghai 200120, PRC
Tel: +86-21-6179-9834 E-mail: shanghai@yulchon.com

미얀마 (양곤 사무소)

Unit #6-#7, Level 4, Uniteam Training Office Building, No.84, Pan Hlaing Street,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7537-088 Fax: : +95-1-7537-088 E-mail: yangon@yulchon.co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moscow@yulchon.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The Energy, 32nd Floor, SCBD Lot 11A,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62-878-8994-7958 Fax : +62-21-2978-3800 jakarta@yulchon.com